

Issue No.  
2018-10  
October 2018

# 국제 인권 동향

## Human Rights Worldwide



### 주요 인권 소식

#### 2018 세계 인권옹호자 대회 개최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과 유엔 인권옹호자선언 채택 20주년을 맞이하여, 2018 세계 인권옹호자 대회가 개최되었다. 29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본 대회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150명 이상의 인권옹호자가 참석하여, 인권 증진과 억압, 인종주의, 차별 근절을 위한 향후 20년 계획을 논의하게 된다.

현재 인권옹호자들은 일상적 위협과 보복의 위협에 처해있으며, 국가들은 1998년 인권옹호자선언 채택을 통해 인권옹호자를 존중하고 보호하겠다고 한 다짐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인권에 대한 열정을 가진 평범한 이들이 일상속의 정의와 평등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사, 공장 노동자, 언론인,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모든 이들이 그들의 권리를 누리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바탕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독재자, 부패한 관료, 천연자원이나 토지에 대한 공동의 권리보다 그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제기한다.

이번 대회의 공동 주최기관 중 하나인 프론트라인 디펜더스의 앤드류 앤더슨 사무총장은 정부와 기업과 힘 있는 자들이 인권옹호자가 공동의 기본적 권리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괴롭히고, 감시하며, 구금하고, 고문하며 심지어 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있어 이번 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제1차 세계 인권옹호자 대회는 20년전인 1998년 파리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를 기념하여 올해 대회의 폐회식을 제1차 대회 개최 장소와 동일한 곳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개발 여성권리 연합(AWID), 국제인권연맹(FIDH), 프론트라인 디펜더스, 국제 인권서비스, 고문반대세계기구(OMCT)와 국경없는 기자회 등이 공동주최하였다.

## 유엔 주요 소식

### 북한인권결의안, 유엔총회 공식상정 예정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작성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오는 31일 유엔 총회의 제3위원회에 공식 상정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유럽연합과 일본이 토마스 오헤야 키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초안에 대해 지난해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60여개 공동제안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많은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비핵화나 남북한 간의 화해 등 다른 문제는 다루지 않고,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에만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나 증거에 기반한 인권문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12월 개최될 제73회 유엔총회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유엔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특히 2012년, 2013년, 2016년, 2018년에는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유엔 주요 소식

### 자유권규약위원회 생명권 일반 견해 채택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생명권에 관한 자유권규약 제6조에 대한 일반논평 제36호를 채택하였다. 또한 차기 일반논평 주제로는 자유권규약 제21조의 평화로운 집회에 관한 권리를 결정하였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5년 7월 14일 처음으로 일반논평 제36호 작성을 시작하였으며, 그 후 2017년 7월 열린 제120차 회기에서 1차 검토를 완료하였다. 유엔 회원국, 지역인권 메커니즘, 유엔 기구, 국가인권기구, 비정부단체 등의 의견을 담은 2차 초안 검토는 2017년 10월 시작되었다.

본 일반논평은 1982년과 1984년에 채택된 생명권에 관한 일반논평 제6호와 제14호를 대체하고 있으며, 사형제폐지,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강력한 수단의 필요성, 수감자들의 권리 보호, 보복으로부터의 인권 옹호자 보호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생명권에 대한 폭넓은 법적 해석과 존엄한 삶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기존의 법률과 생명권에 대한 관행을 성문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본 일반견해는 향후 생명권이 다뤄져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 기획특집 (인권메커니즘)

## 행사달력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자유권협약)

1966년 12월 16일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자유권협약)은 2개의 선택의정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선택의정서는 자유권규약과 동시에 채택된 개인고발 제도에 관한 것으로 1976년 3월 23일 발효하였다. 두 번째 의정서는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것으로 1989년 12월 15일 채택되어 1991년 7월 11일 발효하였다. 본 의정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의무를 부과하지만, 전쟁 중에 행해진 군사적 성격의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보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4월 자유권규약과 제1선택의정서에 가입하였으며, 가입시 국가간 고발을 인정한다는 특별선언을 하였고, 4개 조항을 유보하였다. 그 후 국내법을 개정하여 3개 유보를 철회하였고, 노조결성 등 단결권에 관한 제22조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인정하겠다는 유보를 유지하고 있다. 사형폐지에 관한 제2선택의정서에는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본 규약은 53개의 조문을 6개의 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1부는 만족자결권, 2부는 인권 혹은 협약의 적용, 3부는 구체적인 인권의 내용, 4부는 규약의 이행감시 체제, 5부는 규약의 해석, 6부는 규약의 비준, 발효, 개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2018년 11월 UN주요회의 일정

날짜	회의	비고
10/22-11/9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71차 회기	
11/5-11/30	강제실종위원회 제15차 회기	
11/26-12/14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97차 회기	

###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코멘트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황소영 2125-9884

sygraceh86@nhrc.go.kr